

의안번호	2206823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4. 1. 7.
추계번호	24F618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4조의2 신설 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기업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, 설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－ 공제율: 중소기업 20%, 중견기업 15%, 대기업 10%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2 신설 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,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의2 신설)
- 개정안은 기업이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장애인등편의법’)에 규정된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, 기업규모별로 설치금액의 10~20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 - － 대상시설은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으로 대상시설

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

※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4조

－ 공제율: 중소기업 20%, 중견기업 15%, 대기업 10%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기업의 기업규모별로 생활 환경 인증을 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주체, 설치비용 등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향후 기업이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추이를 추정할 수 없음

－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수 등에 대한 통계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“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”에 집계되어 있으나,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주체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

※ “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”는 설치시설에 대한 통계를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, 민간시설의 설치주체에 대한 정보 등은 부재

－ 또한,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수 등에 대한 통계 외에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정보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공제액의 기초가 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

－ 참고로, 2023년 기준 공공 및 민간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장애인 등을 위한 민간 편의시설 수: 2023년 기준

구분	대상 건물수(개소)	설치기준수 ¹⁾ (A,개)	설치수 ²⁾ (B,개)	설치율 (B/A,%)	적정설치수 ³⁾ (C,개)	적정설치율 (C/A)
편의시설	190,991	6,440,413	5,743,896	89.2	5,099,250	79.2
· 공공 편의시설	9,891	594,430	506,879	85.3	436,863	73.5
· 민간 편의시설	181,100	5,845,983	5,237,017	89.6	4,662,387	79.8

주: 1) 설치기준수는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값

2) 설치수는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수

3) 적정설치수는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물 수

자료: 보건복지부, 「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」, 2023.11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